

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(제2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32조제5항 제1호	자격취소	
나.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	법 제32조제5항 제2호	자격정지 6개월	자격정지 1년
다.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32조제5항 제3호	자격취소	
라.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	법 제32조제5항 제4호	자격취소	
마. 과실로 그 업무(서류 작성을 포함한다)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	법 제32조제5항 제5호	자격정지 10일	자격정지 1개월